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50290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유정수

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신은규, 나인경

변론 종결 2022. 1. 14.

판결 선고 2022. 1. 28.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45,3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45,3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들은 2019. 6. 6.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H가 있었는데, H는 2019. 8. 20.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9. 30.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6074호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 3) 피고와 F은 H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의 동생이다.

나. F의 담보제공 및 대출

F은 2012. 3.경부터 2016. 6.경까지 아래 대출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외할머니인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92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위 돈을 소비하였다.

[대출 내역표]

1	충남 아산시 I 외 8필지	2012.3.30.	J조합	845,000,000	650,000,000
2	충남 아산시 K 외 1필지	2012.3.30.	L조합	1,820,000,000	1,400,000,000
3	서울 용산구 M 외 1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2014.3.7.	N조합	780,000,000	650,000,000
4	2016.3.16.	264,000,000	220,000,000		
5	서울 광진구 ○아파트 P호	2016.6.8.	(주) Q	1,200,000,000	1,000,000,000
합계			3,920,000,000		

다. 망인 및 원고들의 대위변제

1) 망인은 2017. 11. 9.경 위 대출 내역표 순번 1, 2 기재 F의 대출채무 중 1,17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래 대위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F의 대출채무 중 합계 2,713,944,8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 내역표]

1	충남 아산시 I 외 8필지	J조합	650,000,000	2019. 12. 23. 84,612,284원
2	충남 아산시 K 외 1필지	L조합	1,400,000,000	2020. 1. 22. 816,000,000원
3	서울 용산구 M 외 1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	N조합	650,000,000	2020. 2. 24. 651,454,330원
4	2020. 2. 24. 220,494,519원			
5	서울 광진구 ○아파트 P호	(주) Q	220,000,000	2019. 9. 26. 200,379,342원 2019. 11. 11. 200,131,945원 2020. 1. 3. 540,872,459원
합계	2,713,944,879원			

3) 원고들은 2019. 12. 4. F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832호로 'F은 원고들에게 각 2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0. 6.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F은 2012. 3. 28.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6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3. 5.경부터 2018. 12. 5.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39,418,496원을 반환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F을 위하여 나머지 120,581,504원(= 460,000,000원 - 339,418,496원)을 보관하고 F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145,376원(= 120,581,504원 × 상속분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F과 피고 사이에 1)항 기재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F이 피고에게 위 120,581,504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증여 당시 원고들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F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각 30,145,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F을 위하여 120,581,504원을 보관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한 보관금 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F이 피고에게 120,581,504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범준